

의안번호	2208403
의 퇴 인	한준호의원
회 답 일	2025. 7. 10.
추계번호	25B107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3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제1항) <단서 삭제>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조항(단서) 삭제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함(제2항)</u> <u>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신설)</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의3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현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도 개요

- 현행법¹⁾은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특정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특정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종사를 제한(이하 “종사제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현행법²⁾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영업점(이하 “사업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하 “종사자등”)의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되, 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발급받아 사업자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또한, 종사자등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직접 요청할 수 없으나, 종사자등이 요청한 범

1)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등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음

[표 1] 현행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도 개요

○ 제도 취지 -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성범죄자·강력범죄자의 종사를 제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범죄별 종사제한 기간 차등 규정(2~20년) ○ 조회 절차 - (오프라인) 사업자등 또는 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경찰청에서 종사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요청인 직접 방문 수령) - (온라인) 종사자등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사업자등은 온라인으로 요청 불가하며, 종사자등이 회보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등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 범죄경력회보서 포함 내용 - 인적사항, 죄명, 처분 기관명, 처분 일자 및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범죄경력회보서)를 사업자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등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등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 통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19조의3제3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등이 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등이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개편할지 또는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지 여부³⁾, 종사자등의 동의 여부 확인 방식, 이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시스템 개편 또는 구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안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의 최근 3년간 운영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3	2024	2025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경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운영)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등 과학수사 정보시스템(8종) 통합 유지관리	1,404	1,311	1,414

주: 위 예산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포함한 8종의 과학수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경찰청

3) 현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은 종사자등이 로그인하여 본인의 범죄경력을 요청하는 방식(종사자등이 회보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등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이나, 개정안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업자등이 로그인하여 종사자등의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